##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171 제출연월일: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호의2 중 "진열·보관 또는 운송"을 "운송"으로 한다.

제89조의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6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4의2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	
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	
매·대여할 목적으로 <u>진열·</u>	
<u>보관 또는 운송</u> 하거나 무선국	
• 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제89조의3(과태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b>.</b>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
	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
	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u>보관한 자</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89조의3 태료)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1	안 제89조의3 (과태료)	비용이 연평균 10억 원 미만인 경우
	(平대年)	* (현행) 연간 벌금 부과 금액 약 3~4억 원 → (개정 후) 연간 과태료 약 1.5~2억 원 추정

#### 2. 상세 사유

- 현재는 전파법 제86조(벌칙) 제4호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금액은 연간 약 3~4억 원임
  -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규정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할 경우, 동일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1.5~2억 원의 과태료 징수가 예상되며,
  - 재정수입 면에서 1.5~2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동 규칙 제3조 제1항제1호(예상 비용 10억원 미만)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

###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 Ⅳ.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이정헌	김현호	윤희봉	최병택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현호	044-202-4956	khhchj@korea.kr